

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 (제7조2 관련)

상정 대상 항목		권 고 기 준
자연지명	산·봉	기복량 100m이상
	골짜기	산의 주능선에서 파생된 골짜기
	폭포	낙차 5m이상
인공지명	교차로·지하차도·터널	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들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의 시설물이나, 그 도로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
	교량	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과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및 계곡, 해안, 해협, 철도 위·아래 등을 건너는 경우에 사용되는 교량
	공원	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1,500㎡이상
	광장	「도시·군 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9조에 따른 광장으로서 면적이 3,000㎡ 이상인 경우
	거주	도시개발 등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아파트는 공공성이 부족하고 역사성,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상정 제외